

판 결

사 건 [redacted] 건물인도

원 고 [redacted]

피 고 [redacted]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

담당변호사 조효동

변 론 종 결 [redacted]

판 결 선 고 [redacted]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억 5,000만 원에서 [redacted]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[redacted]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[redacted]부분 [redacted]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71

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위 ■■■부분 ■■■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 하라.

2. 원고의 나머지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1/4은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